

제 883 호
1982. 1. 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편집 : 공보관 이충우
전화 72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25-6090

시보

차 례

◎ 조 례	
제 1591 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3
◎ 규 칙	
제 1958 호 :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 14
제 1959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16
◎ 훈 령	
제 558 호 :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안) 17
제 559 호 :	서울특별시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 규정중개정규정 33
제 56 호 :	서울특별시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 33

<이편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허가 (사업기간연기)	35
	제 4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허가 (사업기간연기)	36
	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변경허가	36
	제 6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시행허가	37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38
	제 8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	39
	제 9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	39
	제 1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40
	제 11 호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41
	제 1 호 (성복구) :	광고물정비시범가로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43

◎	공	고	
	제 1 호 (교육위원회) :	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공고	43
	제 1 호 :	수출입업허가증갱신신고요령공고	44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공람정정공고	45
	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시행공람공고	46
	제 4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공고	47
	제 5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소지정취소공고	47
	제 6 호 :	도로공사계획공고	48
	제 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50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591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 5조의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에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임의 기준 및 준비사항)

① 각 기관에서는 계획수립,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무등을 제외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사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위임하고자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입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휘감독 및 책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 4 조 (사전승인 및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5 조 (위임사무) 시장이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본다.

(별표)			
위 임 사 무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내 구 국	1. 행정구역 명칭변경 증명 2. 행정서사업 가. 허가 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다. 사무소 이전, 휴폐업 재개업 신고 라. 허가증 (재) 교부 마. 행정서사회 지회의 보고사항 처리 바. 행정서사회 지회의 감독 3. 소개영업장 영업정지처분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행정서사법 제 5 조 제 8 조,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2 조 행정서사법 제 10 조 행정서사법시행령 제 13 조 제 21 조 제 22 조 소개영업법 제 6 조	구 청 장
재 무 국	1. 물품불용 결정 (차량, 지하철, 수도사업, 병원사업 특별회계 소관 물품 등) 2. 주민세 징수납세 조합의 교부금 지급 3. 마권세징수 교부금지급	지방재정법 제 61 조의 6 제 1 항 지방세법 179 조의 5 동법시행령 130 조의 1 지방세법 제 234 조의 14	"
보건사회국	1. 숙박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가. 숙박업 시설등급 결정 나. 숙박영업 허가 다. 숙박업소의 보고요구 및 검사 라. 숙박업시설개수 명령	숙박업법 제 3 조 숙박업법 제 4 조 동법시행령 제 1 조 숙박업법 제 7 조제 1 항 숙박업법 제 7 조제 2 항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건사회국	사. 영업소 이외 장소에서 의 영업행위 인정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행 령 제 2 조, 제 3 조	
	아. 영업소 명칭등의 변경 신고	이용사 및 미용사법 시 행규칙 제 15 조	
	4. 시설요취 (화장장, 납골 당) 설치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2 항	구 청 장
	5. 무덤분묘 개장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
	6. 시계운반업 허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 17 조	"
	7.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전염병예방법 제 11 조, 제 12 조	보건소장
	8.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전염병 예방법 제 20 조	"
	9. 제 1 종 전염병 예방시설 의 설치	전염병 예방법 제 23 조	"
	10. 제 1 종 전염병환자에 대한 방역조치	전염병 예방법 제 37 조	"
	11. 제 1 종 전염병의 예방 조치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제 43 조	"
	12. 제 1 종 전염병에 대한 강제처분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
	13. 기생충예방을 위한 수거	기생충질환예방법 제 6 조	"
	14. 보건소 지도감독	보건소 설치에 관한 규 정 제 3 조	구 청 장
	15. 의료기관개설허가 (신고)	의료법 제 30 조	보건소장
	16.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 고) 사항 변경	"	"
	17. 의료기관 개설특혜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의료법 제 31 조	"
	18. 의료기관개설 특혜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 설 허가사항 변경	"	"
	19. 적혈물처리업자 지정	의료법시행규칙 제 11 조	"
	20. 의약품 판매업 허가	약사법 제 35 조	"

국 부	사 두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사회국	21. 마약법 제 7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마약취급자 면허	마약법 제 7 조	보건소장
	22. 마약법 제 7 조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마약취급자 면허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면허증 재교부	마약법 제 7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 조, 제 7 조	"
	23. 마약구입서 (판매서) 교부	마약법 제 13 조	"
	24. 사고마약 폐기허가	마약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제 3 항	"
	25. 마약취급자격 실자 소지마약 신고	마약법 제 16 조제 1 항	"
	26. 마약 양도승인	"	"
	27. 마약취급자 단속	마약법 제 51 조	"
	28.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지정, 폐업 등의 신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8 조, 제 24 조	"
	29. 향정신성의약품 사고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 27 조	"
	30. (안마, 침술, 봉구) 시술소개선 신고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사관한규칙 제 17 조	"
	31. 사회복지법인의 임무 및 재산상황 검사 및 감수	사회복지사업법 제 16 조 제 1 항	국정산
	32.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허가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 제 2 항 단	"
	33.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 (단, 사업범위가 2 개도 이상인 법인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1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보건사회국	34. 사회복지법인 등의 임시 이사선임 35.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 업신고 및 변경신고 36. 기증물품의 용도증명발급 37.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3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인가 및 인가취소, 사업정지처분 39. 의례식잔등의 영업허가 및 취소령 40. 사회복지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41. 사회복지시설 폐지 사업정지 승인 42. 사회복지시설 개선, 사 업정지, 허가취소 43. 시설보호시설에 있는 미 성년자인 교아의 후견인 지정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 동시행규칙 제 5 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3 조 관세법 제 28 조의 6 제 1 항 제 2 호 동법시행규칙 제 19 조 제 3 항 아동복지법 제 11 조 " 제 20 조 " 제 26 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9 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4 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4 조 사회복지사업법 제 23 조 보호시설에 있는 교아의 후견 인 직무에 관한 법률 제 2 조	구 청 장 " " " " " " " " " " " "
산업경제국	1. 제량증명업 및 제량기 판매업 등록 2. 기존공장의 등록 3. 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 기재사항 변경신고 4. 제 2 종 전기공사업 보 고 및 검사 5. 전압 5 만 V 미만, 전력 500 kw 미만 자자용 전기공작 물에 대한 권한	제량법 제 15 조 공업배치법 제 14 조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전기공사업법 제 33 조 전기사업법 제 47 조 내 지 제 51 조	" " " " "

국 별	사 무 명	근 저 별 령	수입 기관
산업경제국	6. 일반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 제 44 조	구청장
	7. 고압가스용기, 기기제조 수리업허가 및 지도감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4조	"
	8. 고압가스용기, 기기, 기구 및 특정설비 수입신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21 조	"
	9. 가축전염병 방지		
	가. 가축에 대한 소독 및 청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6조	"
	나. 감염가축의 격리이동 제한	" 제 8조	"
	다. 감염가축의 도살처분 명령	" 제 10조	"
	10. 동물(가축)병원 개설신고	수의사법 제 17 조제 3 항	"
	11. 공 수와사의 임면	" 제 21 조	"
	12. 종 개업 등록	축산법 제 13 조제 1 항	"
	13.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증 교부	" 제 16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1 조제 2 항	"
	14. 동물용 의약품구 및 위 생용품 판매업 등록	동물약품등 취급규칙 제 8 조	"
	15. 동물약품판매업 허가	" 제 10 조	"
	16. 동물약품 취급신고	" 제 14 조	"
	17. 농약품판매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 10 조	"
	18. 가축 자가사육 증명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
	19.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사료관리법 제 9 조제 2 항	"
	20. 종묘(채소, 과수)상등록	종묘관리법 제 3 조	"
	21. 비료판매업 등록 및 신고	비료관리법 제 13 조	"
	22. 방제비용부담명령서 교부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 및 식품방역법 제 23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제 1 조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산업경제국	23. 일반방제업 등록	농약관리법 제 11 조 1 항	구 천 장
	24. 농지개량제 경비부과 인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63 조 의 3	"
	25. 수산제조업의 신고	수산업법 제 45 조	"
	26. 어업허가 (신고)	내수연어업개발촉진법 제 8 조, 제 9 조	"
	27. 양곡매매업 (도매업, 소매업)		
	가. 영업허가	양곡관리법 제 15 조 의 3 제 1 항	"
	나. 영업시설의 양도 임대 변경승인 다. 영업폐지신고 라. 행정처분 (영업정지, 허가취소등)	" 제 15 조 의 3 제 4 항 " 제 22 조	" " " "
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확인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2 조	"
	2. 환지 (확정, 예정지 지정) 증명	제 2 항	"
	3.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지장물 이전제거 및 보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0 조, 제 41 조	"
	4. 사도 개설허가	사도법 제 4 조	"
	5.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5항이내에서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중 가, 나, 라, 마, 사, 자 및 차목과 규칙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동조 제 1 항 제 4 호 바, 아 및 차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도시계획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0 조, 제 21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 내지 제 4 조	"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시계획국	<p>나. 규칙 제 2 조제 1항제 1호 아목및 동항 제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증축</p> <p>다. 규칙 제 2 조제 1항 제 6호중 가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p> <p>라. 규칙 제 3 조제 2호중 잡목 쉼아내기, 가지치기및 지장목, 지압목, 피해목등의 제거와 녹종연구시험을 위한 국가기관의 벌채 및 간벌</p> <p>마. 기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포함) 의 시행</p> <p>바. 규칙 제 2 조제 1항 제 3호 가목중 농업용 양수장 (17제곱미터 이하) 의 건축 및 증축</p> <p>사. 규칙 제 2 조, 제 1항 제 3호 가목중 영내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p> <p>아. 규칙의 제 2 조 제 1항 제 3 호 가목중 국도, 고속국도, 지방도의 신설확장및 보수</p>	<p>도시계획법 제 21조및 동법시행령 제 20 조, 제 21 조, 동법시행규칙 제 2 조 내지 제 4 조</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구청장</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명	수입기관
	6.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건축허가 7.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의 토지관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9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9 조	구 청 장 .
건설관리국	1. 다음에 제기하는 준공 미필기존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권 한 (단, 건축법 제 5 조에 의한 본청 관장 업무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에 의한 사업승인 을 요하는 건축물중 본 청 관장업무 제외) 가. 동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6 조에 규정하 는 권한 2. 다음에 제기하는 건축 법상의 권한 (연면적 3,000㎡를 넘는 건축 물, 11층 이상인 건축 물, 목정가구 정비지구내 의 건축물 제외) 가. 건축법 제 2 조제 15 호 나목, 제 5 조, 제 6 조 제 3항 제 7 조, 제 7 조의 2, 제 7 조의 3 제 2항, 제 8 조, 제 9 조 의 2 제 3항, 제 42 조의 제 1항 제 1호, 제 4 호 및 동조 제 4항, 제 43 조 제 4 7 조 제 2 항	준공미필 기존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및 제 6 조 건축법 제 5 조및 동법시 행령 제 5 조	구 청 장 .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입 기 관
건설관리국	의 규정에 의한 권한 전부 3.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 축 허가 4. 주택개량 재개발지구내 토지 형질변경 허가 5.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신고 6. 자치관리 기구인가 및 자치관리 폐지 신고 7. 주택관리인 업무 신고	도시계획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 도시계획법 제 4 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10 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12 조 내지 14 조 공동주택관리령 제 22 조	구 청 장
환경녹지국	1. 오물처리시설(소각장, 처분장) 설치 승인 및 준공신고 2. 액상폐기물 정화조 설치신고 3. 액상폐기물 정화조 검사필증 교부 4. 환경보전에 관한 보고 및 검사증 5. 폐기물 운반신고 6. 폐기물 종말처리 신고 7. 영립계획의 작성 지정 인가 8. 사업신고 9. 사업명령	오물청소법 제 9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1 조 서울 시 오물청소에 관한 조 례 제 6 조 오물청소법 제 1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오물청소법 제 2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 조 환경보전법 제 24 조 환경보전법 제 51 조 제 2 항 환경보전법 제 52 조 산림법제 8 조 제 11 조 제 12 조	구 청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명	수입기관
환경녹지국	10. 영림계획의 변경 명령 및 인가취소	산림법 제 13 조	구 청 장
	11. 사업의 정지 또는 대 집행등	" 제 14 조	"
	12. 사업 대집행확인서 및 산림 소유지 비용 불변 상 확인서 발행	" 제 15 조 제 2 항 제 2 호 제 3 호	"
	13. 일반개발지역의 개발 명령, 대집행, 대집행자의 교체, 시정개발 대집행확인증서 발행	산림법 제 26 조, 제 27 조 제 29 조, 제 31 조, 제 32 조	"
	14. 경영의 환원에 대한 재결	산림법 제 33 조 제 4 항	"
	15. 조림의 대행	" 제 41 조 제 3 항	"
	16. 입목벌채, 산림훼손, 입산물의 굴취, 채취등 허가와 신고, 복구 명령	" 제 90 조 제 91 조	"
	17. 입산 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입산허가등	" 제 97 조 내지 99 조	"
	18. 산화방지를 위한 허가 산화예방, 산화 경방활동 진화를 위한 조치	" 제 100 조 내지 102 조	"
19. 보전임지의 조사확정	산림법시행령 제 23 조 제 3 항	"	
상 하 수 국	1. 하수도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2 개 구 이상 연결 된 간선하수도 제외)	하수도법 제 8 조	구 청 장

국 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상하수국	2. 공공하수도 사용공고 및 점용허가 (본청 타과와 관련된 사항제외)	하수도법제 9 조, 20 조	구청장
	3. 점용농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하수도법제 10 조	"
	4. 비관리청 시영공공하수도공사허가 (본청 타과와 관련된 사항제외)	하수도법제 13 조	"
	5.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하수도법제 24 조	"
	교 통 국	1.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고)	주차장법제 12 조
	2. 자동차등록표 교부대행 허가	도로운송차량법제 23 조	"
	3. 정비관리자의해임명령	제 43 조의 6	자동차관리사업소장
	4. 차령연장허가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제 4 조	"
	5. 노상주차장설치및관리	주차장법제 7 조, 8 조	구청장
민방위국	1. 민방위대의 동원명령	민방위기본법 제 22조, 제 28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9 조제 3 항	"
소방본부	1.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소방법 제 15 조	소방서장
	2. 위험물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규정인가	소방법 제 20 조	
	3. 소방대상물 개수 명령	소방법 제 7조	
	4. 소방설비업등록	소방법 제 30조제 1 항	
	5. 소방용 기계, 기구 관매신고	소방법 제 35조	
	6. 밤설치업자지정	소방법시행규칙제 26 조	

규 칙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8 호

서울특별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하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제 2 조 (권한의 위임) 하천수익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에 관한 토지등의 가액결정과 부과 및 징수등 일체의 업무는 당해부담금의 부과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출장소장 포함.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과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지정한다"를 삭제한다.

제 3 조 제 1항중 "부담금"을 "하천수익자부담금 (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 1. 7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규칙제 1959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및 제 5 조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제 3 조의 추천서 (제 4 호서식) 서식중 "출장소" 및 "출장소장"을 삭제하고 조사책임자의 "총무과장"을 "새마을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1.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인

◎ 서울특별시 훈령 제 558 호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경찰국위임전결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 첨 >

별 표

기능별	번호	진 명	계장	과장	부 주장	주장
공 통	1	경찰업무계획 및 지침 가. 기본계획 및 지침 나. 일반적 세부시행사항			○	○
	2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자체사고, 중요사 건 및 재난사고 발생처리				○
	3	중요간행물간행 및 발표사항				○
	4	직원근태 가. 과·계장급 이상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5	시간외 근무명령 가. 과·계장급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6	경위이하 과내 근무부서지정	○	○		
	7	경사이하 계내 사부분장지정	○			
	8	과소속직원표창상선		○		

기능별	번호	내 용	제 장	과 장	부 국 장	국 장
	9	소관업무기본운영계획 및 심사분석		○		
	10	각종경찰행정자료조사 및 정기보고	○			
	11	각급 정보망운영		○		
	12	진점 탄원서등 민원처리 가. 청와대총리실하명사함 나. 경위이상의 민원사함 다. 기 타 라. 처리결과통지		○		○ ○
	13	출장명령 및 출장복명서 가. 과·제장급 나. 경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14	정보비연간재배정 및 집행계획				○
	15	과내정보비집행 및 출납		○		
	16	국내왕복문서 및 협조사함처리		○		
	17	수합문서처리	○			
	18	수리치 못할 문서의 반려	○			
	19	소환장 발급	○			
	20	수배 및 해제	○			
	21	재증명 및 확인증 발급		○		
	22	근구일지등 제부책대장정리	○			
	23	대외기관에 발송되는 간전 가. 중요사안 나. 경미사안		○		○
	24	유관기관 및 단체등 회의개최				○
경 무	1	직원순직 및 사망보고				○
	2	직원공상보고			○	
	3	경찰 예식, 익전행사 회의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

기능별 번호	진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4	경찰사 편찬				○
5	직원후생복지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		○
6	순직, 사망, 조의 금빛 정년퇴직자 전별금지금 가. 계획 나. 각 출 다. 지급	○	○		○
7	직장저축 가. 단체 나. 개인	○		○	
8	당직 근무지정 가. 경감이상 나. 경위급 다. 경사 이하	○	○	○	
9	감독순시 가. 순시계획 나. 순시지정 및 업무처리		○	○	
10	과체경비 계획 및 지도		○		
11	직원 건강관리		○		
12	경무협회 운영	○			
13	치안일지		○		
14	경찰회보 발간		○		
15	방송실 운영	○			
16	경찰조직 및 직제				○
17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제경 또는 개폐 제청				○
18	행정지도개선				○
19	경찰기본운영계획 가. 시행계획 수립				○

기능별	번호	진 명	제 장	과 장	부국장	국장
		나. 수정계획 및 심사분석			○	
		다. 월중 업무계획			○	
		라. 매월 정보비 배정		○		
	20	치안행정감사				○
	21	법령질의 회시			○	
	22	도서관리				
		가. 구입신청	○			
		나. 도서관리 비치 열람 대출	○			
	23	타기관 법제 문서처리	○			
	24	법령 및 도서배부	○			
	25	감사원 감사처분 요구				○
	26	물품 및 공사, 검사보고서		○		
	27	월매 재산증명서류 제출		○		
	28	일일회계 지도 결과보고				
		가. 중요사항		○		
		나. 경미사항	○			
	29	경찰공무원등의 정원관리				○
	30	경찰공무원 임용				
		가. 경정급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
		나. 경감이하의 임면 및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과				○
		다. 경사이하의 임면 및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전과			○	
		라. 총경이하의 정기승급		○		
	31	경찰공무원 징계집행				
		가. 경위 이상			○	
	32	고용직공무원 임면		○		
	33	회계직공무원 임면			○	
	34	경찰공무원 비밀취급인가 (Ⅱ 급이상)		○		
	35	인사기록관리	○			

기능별	번호	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36	경찰공무원승 발급및 흉장 대여, 회수	○			
	37	고용직공무원 채용및 시험계획		○		
	38	경찰관 제승진 업무관리				○
	39	정기 근무성적등 명정				○
	40	승진대상자 명부작성및 승진임용후보자 확정				○
	41	경찰관 채용시험관리및 특별채용후보자 추천				○
	42	훈, 표 ; 및 감사장 가. 훈표창추천 및 자체표창 나. 경찰협조 유공자 감사장				○
	43	명예경찰관 위촉				○
	44	교육 임교자 지정 가. 경정 이상 나. 격위 이상 다. 경사 이하		○	○	○
	45	교육훈련계획 (직장훈련 포함) 가. 기본계획 나. 세부계획 및 평가		○	○	○
	46	해외유학대상자 추천			○	○
	47	경찰무도 진흥			○	
	48	공무원 연금 사무 가. 기여금등 징수 및 납입 나. 제대부 및 징수 다. 제 퇴직금 (순직, 부조포함) 신청 라. 공무원 상 요양 승인 마. 서류보완 바. 연금 기록관리	○	○	○	
	49	공무원 의료보험사무 가. 보험료 징수및 납입	○		○	

기능별 번호	건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나. 본인 일부부담금 환급		○		
	다. 제공여 신청		○		
	라. 피보험자 자격 관리	○			
	마. 서류보완	○			
50	세출예산의 편성과 배정				○
51	국고세입				○
52	경쟁입찰				
	가. 공사제조		}		○
				1,000 만원이상	
				1,000 만원미만	
	나. 물품구매		}		○
				5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53	결산서 제출		○		
54	예산증감 조치		○		
55	국유재산관리		○		
56	세출예산의 집행		○		
57	예산요구서 제출		○		
58	지출원인행위액및 지출액(총)보고서		○		
59	경리관계 사무의 인수인계		○		
60	동원급식비 지급		○		
61	입찰등록	○			
62	자금 배정	○			
6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계산서				○
64	과오납금의 정리		○		
65	계약 실적보고		○		
66	채권 전부 명령		○		
67	지출계산서				○
68	지출 증거서류	○			
69	징계위원회 운영				
	가. 경위이상 징계요구				○
	나. 경사이하 징계요구및 지시		○		

기능별	번호	진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70	다. 직할대및 경찰서 징제업무 지휘감독 비위관련 첩보처리 가. 청와대 해명 나. 경정이상 다. 경위이상 라. 경사이하		○		○
	71	선행자추천및 징제대상자 처리 가. 경정이상의 장려 및 제고 나. 경위이상의 장려 및 제고 다. 경사이하의 장려 및 제고		○	○	○
	72	타기관 출두 및 소환 가. 경정이상 나. 경위이상 다. 경사이하	○	○	○	
	73	소청및 소송사전처리 가. 경위이상 나. 경사이하		○	○	
	74	감찰특명사함 조사				○
	75	사정판련업무 가. 월해보고 나. 파·서·대추진 실적		○	○	
	76	행정감찰계획수립 실적		○		
	77	감찰 정보비 집행	○			
	78	물품관리 운용		○		
	79	급대용품 출납	○			
	80	소모품 출납	○			
	81	불용품처리			○	
	82	물품증감및 전제액 보고			○	
	83	물품수급관리계획			○	
	84	재물조사			○	

기능별	번호	건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85	손상실처리			○	
	86	양곡배정		○		
	87	양곡출납		○		
	88	기부채 납승인				○
	89	차량예산운용 및 용품 구입		○		
	90	경찰장비 운용계획		○		
	91	무기탄약화학장비 출납	○	○		
	92	차량 정기점검 및 수리		○		
	93	차량용품 및 유류 출납	○			
	94	차량등록말소 신고 및 제속검사 신청	○			
	95	경찰관계 기사 취재요청 승인				○
	96	경찰청사 촬영 승인			○	
	97	신문구독 계획	○			
	98	경찰관계영과 촬영 협조 승인		○		
	99	경찰악대 대외행사 지원			○	
	100	민원서류 접수 배부	○			
	101	미아, 가출인, 분실, 습득, 유실물의 처리	○			
	102	민원상담(구두, 전화) 처리	○			
	103	민원처리 접열 지도 및 감독		○		
	104	관인 실조 및 개각				○
	105	보존기간 경과문서 폐기처분		○		
	106	우표 수불	○			
보안	1	사행 행위 허가 가. 신규 허가 나. 허가 갱신		○		○
	2	신용 조사업 허가				○
	3	사행행위 신용조사업무 행정처분			○	
	4	교련용 공기총 지정 신청		○		
	5	사격장 설치허가				○
	6	총포 화약류 판매수리 허가			○	

기능별	번호	진 명	제장	과장	부국장	국장
	7	총포 화약류 일시 수입허가		○		
	8	화약류 관리기사 행정처분			○	
	9	총포 화약류 제조수입 허가 진달		○		
	0	총포 소지 허가		○		
	11	불법 수렵행위 단속			○	
	12	전당포 지도 단속및 감독		○		
	13	즉심 업무		○		
	14	즉심 청구및 (시) 출납	○			
	15	윤락행위 및 사회풍기정화지도 감독			○	
	16	산림보호단속 협조 업무(산화방지도포함)		○		
	17	안전검칙		○		
	18	안전사고처리		○		
	19	외근업무 지도 감독			○	
	20	방법업무 지도		○		
	21	방법순찰대 지도감독		○		
	22	수상사고방지		○		
	23	무허가 건축물 단속		○		
	24	고출삼 지도감독		○		
	25	타기관 교발사건 지도 감독		○		
	26	자활근로대 운영지도 감독		○		
	27	외근 성적평가		○		
	28	호구조사 실시계획		○		
	29	청소년보호및 아동복지법위반 지도감독		○		
	30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운영			○	
	31	공연장 지도 단속			○	
	32	소년보호도에 관한 상담지도	○			
	33	비행소년의 선도보호및 범죄의 예방지도		○		
	34	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	
	35	청소년선도보호단체 지도감독				○
	36	각종 허가장의 재검토및 기재사항 변경		○		

기능별	번호	내 용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교통	1	교통시설 예산배정계획				○
	2	교통안전시설및 교통순시원 운용에 관한 예산집행 계획 가. 안전시설공사 (1) 3,000 만원 - 2억원 미만 (2) 3,000 * 미만 나. 물품구매 (1) 100 만원 - 1,000 만원미만 (2) 100 만원 미만		○		○
	3	교통 지도 단속계획				○
	4	교통 규제관리			○	
	5	교통사고방지 대책		○		
	6	교통 운수행정 협의		○		
	7	모범운전자 선발및 자격 취소		○		
	8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단속	○			
	9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	○			
	10	교통사고 처리	○			
	11	교통사고 수배차량처리	○			
	12	교통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			
	13	교통 기동순찰관리 운용		○		
면허	1	운전면허시험 실시계획				○
	2	시험 출제		○		
	3	시험 종합성적표		○		
	4	행정처분 (취소, 부활) 결정		○		
	5	시험 관리	○			
	6	적성 검사	○			
	7	개교부	○			
	8	행정처분	○			
	9	면허시험용 장비및 기기관리	○			
	10	면허준기 분실 오손 신고	○			

기능별	번호	내 용	재 장	과 장	부국장	국장	
면허	11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				
	12	전출입 신고	○				
	13	경백증명, 무사고증명 발급		○			
	14	면허 갱신 교부 (군면허 포함)	○				
	15	국제면허 갱신 교부	○				
	16	면허대장 기록 작성	○				
	17	면허증 발급	○				
	18	운전면허 시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19	운전면허 시험관리틀 위한 예산 및 공 사, 용역, 물품제조, 자산취득, 처분교환, 임대차의 신청 가. 1,000 만원 이상 나. 1,000 만원 미만 다. 기타 예산에 관련된 사항			○	○	
	경호	1	경호명령 및 행사 경호경비 계획				○
		2	사태별 경호근무 결정				○
		3	검문소 및 야간초소 운영 가. 설 치 나. 운 영			○	○
		4	재해 및 기타 경비		○		
		5	검문검색 계획		○		○
		6	다중범죄진압, 병력운용		○		
		7	야간통행증 발급		○		
		8	기마대운영 감독	○			
		9	동원급식비 집행		○		
		10	비상소집			○	
11		숙소부 정리	○				
12		청원경찰관 운영		○			
13		민방위 협조 업무		○			
14		청원경찰관의 임용승인			○		

기능별	번호	내 용	계장	과장	부과장	국장
	15	청원경찰관의 배치승인		○		
작 전	1	작전명령 계획 수립				○
	2	전경모집전입 및 배치계획 수립				○
	3	전경 징계 면직			○	
	4	전경진급심사 계획 수립			○	
	5	전경 자체 신고			○	
	6	전경 교육훈련 계획 수립			○	
	7	전경 수형자 재복무 심사			○	
	8	예비군 긴급 동원				○
	9	지역군사당부 연락관 운용		○		
	10	종합 상황실 운영 지도		○		
	11	전경 소원 수리		○		
	12	전경 전보, 휴직, 직위해제 부직			○	
	13	임시 편성부대 운영		○		
	14	초동 타격대 운영		○		
	15	전경 징재업무 지도 감독		○		
	16	전경 흉장 관리	○			
	17	전경 교육훈련 세부실시계획 및 평가		○		
	18	전경 보급 관리		○		
	19	전경 인사기록 관리	○			
	20	전경 복무수첩 관리	○			
	21	전경 교통운임 후불 및 할인증 발급		○		
	22	전경대 운영		○		
	23	예비군 무기 탄약 관리		○		
	24	예비군 급식		○		
	25	방위 소집자 운영	○			
	26	중요시설 방호 계획				○
	27	중요시설 지도 방문				○
통 신	1	통신장비 배정 및 증설				○
	2	무선전화 교신 약부호 지정 및 개정			○	

기능별	번호	명	계장	의장	부국장	국장
	3	통신 자재 출납		○		
	4	통신 예산 집행		○		
	5	통신기기시설, 이설, 철거		○		
	6	통신장비관리		○		
	7	암호자재관리, 배포, 회수, 반납	○			
	8	통신기기 시설 보수	○			
	9	112 및 지령실 업무관리 운영		○		
	10	전문발수신	○			
	11	고용직 및 기술공무원 임용 제청		○		
	12	부외전화가입 승인			○	
수사	1	유치장 호송업무 지도교양 감독		○		
	2	수사 지휘사건 수사처리		○		
	3	민원(고소, 고발, 진정) 사건 수사처리		○		
	4	경제사범 수사처리		○		
	5	계영장 청구		○		
	6	수사 및 감식장비 배정 및 관리		○		
	7	우범자 관찰 보호	○			
	8	사건 추송서 처리	○			
	9	압수물의 보관 관리	○			
	10	감식, 검시, 검증	○			
	11	감식자료수집 및 관리	○			
	12	경미한 수사보고	○			
	13	중요수사 업무 계획				○
	14	범죄수사 및 지도		○		
	15	형사사건 중치		○		
	16	범죄 인지 보고		○		
	17	가환부 품신	○			
	18	병사업무 처리		○		
	19	구속통지	○			
	20	소재 수사 지휘	○			

기능별	번호	건 명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형식	1	5급이상 공무원 독직 사건				○
	2	6급이하 공무원 독직 사건			○	
	3	일반범죄(강력) 사건 수사			○	
	4	초동 수사대 운영		○		
	5	수사 지휘사건 수사처리		○		
	6	수사비상 배치 훈련			○	
	7	타시도 사건수배	○			
	8	공조 제보 업무	○			
	9	사건 추송서 처리	○			
	10	장물 품표 발부	○			
	11	경미한 수사보고	○			
정보 1	1	정보사범 검거 처리				○
	2	첩보 처리 가. 치안 및 정책관련 중요정보 나. 상보, 룹보, 하달 다. 참 고	○	○		○
	3	신원조사 가. 신원조사결과 특이사항 나. 회 보 다. 접수, 하명	○	○		
	4	첩보수집 실적 평가	○	○		
	5	정보기록 관리 운영	○			
	6	정보장비 관리 운영 (사용, 출납, 지원)	○			
정보 2	1	대공업무 운영 계획 가. 중요 계획 나. 대공요원 성적 평가 다. 대공요원 전보	○	○		○
	2	대공요원 정년 부여	○			
	3	대공장비 운영 관리	○			

기능별	번호	진 명	계장	과장	부국장	장
	4	대공업 무지도점검			○	
	5	요시활업무지도감독 가. 요시·관찰, 정신병자 재분류 조정 및 신규면입 나. 요시업무 확인지도 다. 요시동 전출입 이동 라. 요시찰인 및 검거, 자수, 간첩, 남북, 귀환 여부동향 마. 대공위해분자성불수배 및 소재탐지	○	○	○	
	6	사회안전법업무 가. 사안조성품신 나. 보안처분대상자신고 다. 사안송치 및 결정 라. 대상자동태보고 마. 대상자전출입	○	○	○	○
	7	국가보안목표 인원보안 가. 시설, 인원 보안진단 나. 시설, 인원특이사항 동향 다. 공항 검문 검색 라. 공해항요원동향			○	
	8	대공상황실운영		○		
	9	주민등록업무		○		
	10	안전대책(경호)업무지도감독 가. 판단서작성 및 인적위해분자대상감시 나. 안전요원인사제청 다. 업무점검 라. 기본카드작성 마. 긴급신원조사 바. 행불 정신병자, 경호 R시수사 사. 유관업체 신원조사	○	○	○	○

기능별	번호	내 용	제 장	과 장	부 국 장	국 장
		아. 가시 권고종전물점검		○		
		자. 가시 권내 유판기관 서약		○		
		차. 안전위해 사범검거				○
		카. 안전위해 서신수사		○		
		타. 안전위해 사범동태파악	○			
		파. 안전위해 사범시살대상자면입		○		
	11	간첩검거공작지도				
		가. 역용공작				○
		나. 간첩검거				○
		다. 중요대공전략정보				○
		라. 정보사범처리			○	
		마. 용의공작승인		○		
		바. 용의공작 (자체)		○		
		사. 모의간첩훈련			○	
	12	불온전단벽보처리		○		
	13	사실조사처리		○		
	14	적발우편물처리		○		
	15	말공제동원등		○		
	16	일국민대공요원화사업		○		
	17	거동수상자처리		○		
	18	복피선전물처리		○		
	19	긴급신원조회	○			
	1	외국인토지소유권취득허가조사	○			
	2	의사관계신원조사 (판문점방문포함)	○			
	3	한·미 헌병신분증 확인	○			
	4	해외여행자보안교육업무		○		
	5	외교관 및 외국공관관계업무				○
	6	의사관계첩보처리		○		
	7	불온외국서적 및 불법도입		○		
	8	외국인 및 외국상사단체동향		○		

기능별	번호	내 용	계장	과장	부국장	국장
	9	외사관계기록보존관리	○			
	10	외국인 및 교포범죄수사 가. 중요사건 나. 일반사건				○
	11	밀항사범단속 및 밀항용의자 감시		○		
	12	공작사건지도 및 조사처리		○		
	13	외국인 및 교포와 관련진정조사		○		
	14	요시찰인 및 불순용의자시찰		○		
	15	외국인토지불법취득조사		○		
	16	출입국자동항	○			
	17	강제송환자수사		○		
	18	교포동향파악	○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1. 6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 서울특별시 훈령제 559 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포상금지급규정
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중 "최고

100만원"을 삭제한다.

제 3 조 및 별지제 2 호서식중 "제 41 조"를 "제 34 조"로 한다.

부 칙

이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1.6

서울특별시장 박영수 (인)

◎ 서울특별시 훈령제 56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규정(안)

제 1 조 (목적) 시내버스노선조정업

를 공정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노선조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계획국장, 건설관리국장, 지하철본부장, 해당구청장, 시경교통과장이 되고 필요시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제 4 조 (감사 및 서기) ① 심의회에 감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감사는 운수 1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수 1계장으로 한다.

② 감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감사를 보좌한다.

제 5 조 (심의 사항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내버스노선의 신설폐지
2. 시내버스운행제정의 변경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6 조 (심의배제) ① 다음 각호 1에 해당할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도로, 교량등 각종 공사 및 사고로 인하여 시내버스노선을 즉시 조정하여야 하나 심의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때
2. 도로, 교량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노선을 임시로 조성할때
3. 현교통 여건상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때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 7 조 (심의회운영) ① 심의회 의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심의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출석, 심의에 참여케 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록 작성) 심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 (비밀엄수) 심의회의 위원, 감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 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정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수당등의 지급)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운영비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 3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 허가(사업기간 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제 191 호 (81.5.25) 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된 성동구 자양동 649-1 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제 26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1.12.1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세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기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649-1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 3. 사업의 면적 : 간이급식소(건물1동 111.12평방미터)
-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 성동구 자양동 649

정청학원 이사장 장선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전
 - 가. 착수일 : 81. 5.25
 - 나. 준공일 : 81.11.30
- 변경후
 - 가. 착수일 : 81. 5.25
 - 나. 준공일 : 82.11.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4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변경 허가(사업 기장 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66 호(80.7.23)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허가된 성동구 광장동 553-1번지의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553-1 의 2 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학교)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6,790 평방미터 (2,054 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동구 광장동 553 이종성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전
 - 가. 착 수 일 : 80. 8.15
 - 나. 준공예정일 : 81. 8.15
 - 변경후
 - 가. 착 수 일 : 80. 8.15
 - 나. 준공예정일 : 82.12.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 바람.

◎서울특별시고시제 5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제 390 호(80.11.24)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동고시 제 103 호(81.4.6)로 시행 변경 허가하고 동공고 제 368 호(81.12.15)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변경 시행

공립공고한 바 있는 강남구 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동 산마을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3.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 포이동 703 일대 및 염곡동 335 일대

나. 사업의 규모 - 59,417 평방미터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취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산마을

라. 변경내용

○ 마을회관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당초 : 393 변경 : 340

○ 어린이 놀이터 조성

마. 사업기산

당초 80.11.24-81.12.31

변경 80.11.24-82.6.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면적,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명명(생략)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새마을과로 문의 바람.

◎ 서울특별시 고시 제 6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 시행 허가

1. 건설부공고 제 6 호(68.1.18) 및 건설부공고 제 14 호(79.2.8)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8 호(81.6.5)로 도시계획사업 서류 공람공고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309(81.3.22) 호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시행령 제 25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79.12.10)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영등 1-3 주구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변경 시행
- 3. 사업의 규모 (면적) : 14,998.4㎡
(연건평 : 5,789.2 평)
-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1.8-1982.2.28
- 6. 변경 사항
 - 바원국교 교사뒤쪽 당초 2m에서 도로쪽 8m를 확보 경계 변경 및 담장시설 변경
 - 운동장 계획고 변경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 외의 권리명세 (생략)
-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제 7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34 호 (79.10.11) 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동 고시제 339 호 (80.10.6) 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강남구 서초동 261 번지 일대 의교관 공판단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 시행령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관한 위임사항의 내부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 12.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시행지 : 강남구 서초동 261 번지 일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3) 사업의 규모 : 92,699㎡
(28,041.44 평) 동일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 초 변경

- 가) 착수예정일 : 1980.1. 1980.1.
- 나) 준공예정일 : 1981.12.31 1982.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

<p>◎서울특별시 고시제 8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고시</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7 호 (79.4.24) 로 지적승인된 당구 월계동 824-3 번지의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5 조 규정과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사업시행허가하고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 및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1. 5 서울특별시 장</p>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824-3</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영광학원</p> <p>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5,405 ㎡ (1,635 평)</p> <p>라. 사업시행자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월계동 820 이사장 홍인옥</p> <p>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p> <p>1) 착공예정일 : 사업시행허가후 7 월 이내</p> <p>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 부터 1 년 이내</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인의 권리명세</p>
---	---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도봉구 월계동	824-3	담	5,405 ㎡	영광학원	

<p>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생략)</p> <p>◎서울특별시 고시제 9 호</p> <p>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변경허가</p> <p>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92 호 (81.8.5) 로 시행허가된 당구 잠실동 체비지 1-1 번지 경신여자중, 고등</p>	<p>학교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79.12.10) 에 의거 시행변경허가 (사업기간연기) 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 1. 5 서울특별시 장</p>
---	---

<p>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실동 채비지 1-1</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p> <p>(1)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p> <p>(2) 명칭 : 정신여자중고등학교</p> <p>다. 사업규모 및 면적</p> <p>(1) 대지면적 : 42,711.73 ㎡</p> <p>(2) 시설규모</p> <p>(가) 기존건물 : 18,443.99 ㎡ (본관, 중학교, 고등학교, 수위실)</p> <p>(나) 증축건물</p> <p>(1) 주용도 : 체육관</p> <p>(2) 구 조 : 철골트러스</p> <p>(3) 전 평 : 1,765.59 ㎡ (1층 1,513.92 ㎡ 2층 251.67 ㎡)</p> <p>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p> <p>(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잠</p>	<p>실동 채비지 1-1</p> <p>(2) 성명 : 학교법인 정신학원 이 사장 박종렬</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당초 : 81. 8.10-81.12.10</p> <p>(2) 변경 : 81. 8.10-82. 5.30</p> <p>1. 토지조사 및 관계도서 : 생략</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p> <p>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산 31번지의 18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 하고 동법 제 33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 획시설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2. 1. 5.</p> <p>서울특별시 장</p>
--	--

1.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1	1	10	156	길동 163-3	길동 158-5	
폐지	"	1	2	10	160	" 163-12	" 산 32-3	
기정	"	1	3	10	90	" 163-5, 6	" 163-12	
폐지	"	1	3	10	20	" 163-12	" 163-12	
폐지	"	2	1	8	53	" 163-9	" 163-12	
신설	"	3	1	6	57	" 163-9	" 163-13	
폐지	"	3	2	6	40	" 산 32-3	" 산 32-3	
폐지	"	3	3	6	176	" 159-5	" 산 2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장	기	검	중	검	비고
배지	소로	3	4	6	118	길동	163-19	길동산	31	
"	"	3	5	6	124	"	산 28	"	31	
"	"	3	6	6	130	"	169-3	"	27	
"	"	3	7	6	76	"	163-12		163-19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 호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1.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73.9.6) 제 428 호 (78.12.29), 제 367 호 (73.9.6) 및 제 345 호 (79.9.21) 로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동고시 제 382 호 (78.11.30), 제 251 호 (79.7.9), 제 76 호 (77.4.30) 및 제 146 호 (80.5.19) 로 사업계획결정된 을지로 1가구역 제 6 지구, 서소문구역 제 3 지구, 도림구역 제 22,

23 지구, 마포로 1구역 제 10 지구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개발과 및 해당 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시킨다. (관계도서생략)

1982. 1. 8

서울특별시 시장

1. 을지로 1가구역 제 6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조서

(단위 :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비고
6 당초	3,628	1,243	30,764	17/4	업무	35%	632%	별첨
변경	3,550	-	-	20층	업무및 판매	35%	662%	(변경 없음)

2. 서소문구역 제 3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조서

(단위 :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배열
3 당초	9,049	3,620	87,730	17/4	사무실	40 %	670 %	별첨
변경	8,856,2	-	-	24 층	업무및 판매	40 % 이하	550.0 % 이하	"

3. 도입구역 제 22, 23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조서

(단위 : ㎡)

구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주용도	배열
당초 21	1,762					
변경 21	1,741					
당초 22	1,412					
23	1,848					
변경 22	3,210	45 % 이하	670 % 이하	15 층 이하	업 무	○ 각 건축선에서 5미터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이상 확보
당초 24	1,933					
변경 24	2,014					

4. 마포로1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가. 변경결정조서

(단위 : ㎡)

지구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배열 (벽면선)
당 초	3,156	1,105	20,523	13/3	공동주택	35 %	520 %	별 첨
변 경	3,277	-	-	15 층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판매 시설	45 % 이하	500 % 이하	○ 20 m전면도로에서 8m이상 ○ 건축선에서 3m 이상 ○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확보

○성북구창고시제 1 호

성북구광고물정비시범가로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

1. 계획정비지구

로선명	구 간	연 장	비 고
고 산 로	췌월곡동 143 번지 (미아삼거리) 부터 증암동 30-69 (홍릉입구)	2.2 km	

- 가.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계획정비지구물 위와 같이 지정 고시한다.
- 나. 계획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신규게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 다. 관제되는 도서는 당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2. 1.

성 북 구 청 장

공 고

○서울교위공고제 1 호

교육공무원명에 퇴직수당지급
신청공고

교육공무원법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32.2 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

공립 초·중등 교원으로서 지급일 현재 다음의 연령과 경력에 해

당하는 자

가. 연 령

- 1) 60 세이상
- 2) 신체, 정신상 장애로 퇴직을 원하는 경우 55 세이상

나. 경력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 교육행정경력 통산)

- 1) 30 년이상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 년이상
 - 가) 재직중 훈장을 받은 자
 - 나) 재직중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자
 - 다) 재직중 시·도단위 이상의

공인된 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

2. 수당지급일 : 82.2.27(토)

3. 신청기간 : 82.1.10-1.30(21일간)

4. 신청절차 : 소정의 신청서, 건강진단서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 소속기관장 및 감독청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5. 수당지급액 : 기준호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지급배수를 곱한 금액

6. 지급절차
 가. 대상자의 결정 통지 : 대상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장 또는 소속 교육구청장에게 통지한다.
 나. 수당지급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7. 기타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교육구청장 또는 당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

1982.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 서울특별시 공고제 1 호

수출입업허가증갱신신고요령공고

무역거래법시행령 제 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1982년도 수출입업허가증을 다음과 같이 갱신한다.

1.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내 본점을 둔 수출입업허가 전업체

2. 신고기간 : 1982.1.14-1982.1.19 (일요일 제외)

3.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청 시민과 (시민홀)

4. 제출서류
 가. 수출입업자 (무역거래법시행령 제 1조제 1항 또는 제 4항)

1) 공통서류

- 1982년도 수출입업허가증 갱신교부신고서 (제 1호서식)
- 수출실적증명서 (제 2 - 2호서식 : 한국무역회장 확인본)
- 수출입업체 실적조사표
- 무역업자 총람 및 간행자료
- 1981년도 수출입업허가증사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중 제조업체 추가서류

- 중소기업자 (택일)
- ※ 자산 5억원이하 또는 상시종업원 300명이하(업종에 따라서는 500인이하)에 해당되는 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서류
- 총자산액은 최근기 결산 대차대조표 1통 (세무시장 확인 (지상공고분 포함)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분에 한함)
- 상시 종업원은 최근 월분

근로소득 계급별 소득액

- 징수명세서 (48 호서식)
또는 최근월분 소득세징수
액집계표 (10 호서식) 1 통
(세무서장 확인분)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
입한 중소기업자는 동조
합에 가입한 가입확인서
1 통
- 제조업자
 - 공장등록확인원
- 중소기업자를 제외한 기
타 특혜업체 (무역거래법시
행령 제 1 조제 4 항제 9 호
및 제 10 호에 의한 허가
업체는 제외)
- ※ 수출실적에 관계없이
자격유지가 가능하니 아
래서류를 제출
 - 외국인투자기업체 : 외
국인투자기업등록증사본 1 통
 - 기타 특혜업체 : 해당
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 1 통

나. 내국 수출입업자 (무역거래법시
행령 제 1 조제 5 항)

- 1) 1982 년도 수출입업허가증
갱신교부신고서 (제 3 호서식)
- 2) 수출실적증명서
- 3) 1981 수출입업허가증 사본

5. 1981 년도 신규허가업체를 수출
실적에 관계없이 수출입업 자격이

유지되거나 갱신신청은 하여야 함.

- ※ 수출입업자의 수출실적 (무역거
래법시행령 제 4 조)
 - 일반업체 : 연간 100 만불
 - 중소기업체 : " 10 만불
 - 내국수출입업체 : " 5 만불

6.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서민과 (전화 725-3001, 7325)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업부 (전화
771-41) 로 문의하기 바람

1982년 1월 5일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2 호

도시계획사업시행계획공람
정정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 (81.
5.4) 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방배동산 84 번지 12 호
400 ㎡에 배수지 설치공사를 시
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에
의거 서울특별시공고 제 383 호
(81.12.31) 로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하
였으나 정정사항이 있어 정정공람
공고에 응하고져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정정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수도공사와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한다.

1982.1.5
서울특별시장

<p>가. 사업시행지 : 착오 강남구방배동산 48번지 12일부 400㎡ 정정 강남구방배동산 84번지 12 400㎡</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배수지 설치공사) 시행</p> <p>다. 사업의 규모 : 배수지 약 400톤 (부지 400㎡)</p>	<p>라. 사업의 시행자 : 강남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1) 착수예정일 : 1982. 1.25</p> <p>2) 준공예정일 : 1982. 6.30</p> <p>바.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p>
---	--

토 지 조 서

구분	위 치	지 목	지 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착오	강남구방배동 산 48번지 12	임야	400㎡	서대문구연희동 1번지 256호	최장식	
정정	강남구방배동 산 84번지 12	임야	400㎡	서대문구연희동 1번지 56호	최장식	

※ 도면 위치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 공고제 3호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변경 시행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34호 (78. 7.5) 및 동고시 제 348호 (79. 7.28)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되고 동고시 제 492호 (79.11.26)로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시행자 명의변경허가 및 동고시 제 205호 (81.6.4)로 도시계획사업시행 변경허가 (기간연기)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주차장)을 변경 시행코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1년 12월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남구양재동 336-2의 20필지

나. 사업규모 : 22,509(6,809평)(동일)

<p>다.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년월일 : 1979.11.20 준공예정일 : 1981.12.31 변경준공예정일 : 1982.12.31</p> <p>라. 사업시행자 주 소 성 명 전남광주시동구 0-1 (주)광주고속 대표 박정구</p> <p>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p> <p>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정비과로 문의바람.</p>	<p>◎서울특별시공고제 4 호</p> <p>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 업체지정취소공고</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 30 조 규정 에 의하여 아래특정열사용 기자재시 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그지정을 취소하였음을 동법시행규칙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2.1.5 서울특별시장</p>
---	--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 유	관 계 법 규
도봉계 34 호	대진보일러	한두신	쌍문동 143 - 59	무단 전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p>◎서울특별시공고제 5 호</p> <p>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 업소지정취소공고</p> <p>다음의 특정열사용 기자재시공업</p> <p>가. 다 음</p>	<p>지정업소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0 조 2 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하였으므로 동법 제 30 조 1 항 4 호의 규정에 의거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함.</p>
---	---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취소사유	비 고
46	방용설비사	한상보	성내동 876 브럭 1 - 가	무단폐업	
41	백제설비	정봉진	성내동 409-46	"	
39	보은설비공사	이하익	암사 1 동 555-13	"	
25	동신설비공사	장명수	성내동 9-11	"	

1982년 1월 6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6 호
도로공사계획공고

1. 도로법시행령 제24 조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 17 조에 의거 도로공사
 가. 도로공사 계획조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토목과에 비치 열람케한다.

1982.1.7
 서울특별시장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신림동 108-107 간 포장	구로전 화국주변 포장	관악구청	82.1.20. -82.5.30.	
"	봉천동산 81 번지 - 81 번지	봉천 6 동산 81 번 지주변포장	"	"	
"	봉천동 411 옥 3 개소	봉천로지선도로 포장	"	"	
"	신림동 667-668 번 지간	신림 7 동남향국 교주변 하수도공사	"	"	
"	신림 동산 195-60 - 1 부력	신림 11 동산 195 주변 하수도공사	"	"	
"	봉천동 170-산 1 번지	봉천 7 동산 1 번 지주변 하수도공사	"	"	
"	봉천동 107 부력 - 108 부력 - 봉천동 411 부력간	봉천 7 동 351 번지의 1 개소 하수도공사	"	"	
"	봉천동 7-7 번지간	봉천 2 동 7 번지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신림동 255-256 번 지간	주변하수도공사 신림 9 동 225 외 1 개소 하수도공사	관악구청	82.1.20. -82.5.30.	
	신림동산 98-산 98 번지	신림 2 동산 98 주 변 하수도공사	·	·	
	봉천동 66-68 번지 간	봉천 6 동 66 주변 하수도공사	·	·	
	봉천동 326 루터 - 907 번지간	봉천본동 900 - 906 간 하수도 공사	·	·	
	신림동 667, 694, 675	신림 7 동 667 외 4 개소 하수도 공사	·	·	
	신림동산 102 - 산 102	신림 7 동산 102 주변 U형측구 공사	·	·	
	신림동 410-412 번 지간	신림본동 412 외 3 개소 하수도 공사	·	·	
	신림동 1427-1416 간	신림 5 동 1416 외 1 개소 하수 도공사	·	·	

노선명	공사구간	공사명	시행자	공사기간	비고
서울특별시도	봉천동 170-40-173의 5간	봉천 7동 170의 40-173의 5간 하수도공사	관악구청	82.1.20. -82.5.30.	
<p style="text-align: center;">* 도 면 생략</p> <p>위와같이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1.12. 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랑 개 요</p> <p>1. 사업장위치 : 영등포구대림 1, 2동 시점 : 영등포구대림동 861-15 앞, 832-14, 1036-1 경유 종점 : 영등포구대림동 1031-14 까지</p> <p>2. 사업의종류및명칭 : 대동국교 진입로 정비공사</p> <p>3. 사업의규모 : 폭 20 - 연장 204, 폭 8 - 연장 376</p>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p> <p>5.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1982.5.31.</p> <p>6. 사용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재지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p>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문의할것.</p> <p>첨부 : 토지조서 1부.</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p> <p>◎서울특별시공고제 7 호.</p> <p>1. 서울시고시제 1호(69.1.8), 서울시고시제 445호(81.12.22)로 지적고시된 영등포구 시행 대동국교 진입로 정비공사 구간내에 저촉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p> <p>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 한다.</p> <p>3.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p>					

2295

토 지 조 서										
연번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이외권리의 종류및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대림동 1039-14	담	360㎡	360㎡	도로	이문규	목포시산정동1050			
2	" 812-18	매	132㎡	132㎡	"	강석길	신림동 812-18			
3	" 832-12	담	965㎡	145㎡	"	천병수 외 5인	대림동 881	이윤혜	대림동 881	공유지분 2/15
								천병수	"	" 4/15
								천병현	"	" 2/15
								천병석	"	" 4/15
								천병임	"	" 2/15
								천재산	"	" 1/15
4	대림동 833-1	매	291㎡	291㎡	"	한재훈	신대방동 605			
5	대림동 834-4	담	483㎡	483㎡	"	이윤혜 외 5	대림동 881	이윤혜	대림동 311	" 2/15
								천병수	"	" 4/15
								천병현	"	" 2/15
								천병석	"	" 4/15
								천재산	" 832-11	" 1/15
								천병립	" 881	" 2/15
6	대림동 834-4	담	545㎡	545㎡	"	유은자	대림동 856			

제 833호

지

부

1982.1.7

54-51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소유권의 의권 의류및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대림동 859-4	담	694	694	도로	이기홍	예관동 124-2			
8	대림동 858-36	대	1167	1167	"	민근식	수유 194-12			
9	" 860-31	담	83	83	"	김덕윤	대림동 824			
10	" 861-9	도	489	489	"	정완현 윤병호	남가좌동 130-25 대림동 1064			
11	" 1036-4	담	337	337	"	이기홍	예관동 124-02			
12	" 1035-2	"	879	879	"	김창완	적선동 192			
13	" 1034-1	"	112	112	"	김병대	구로 124			
14	" 1033-1	도	904	904	"	조용호	신길 119-9			
15	대림동 1631-14	담	165	165	"	김영좌 송정한 우경호	대림 1081-57 구로 436-41 동승 5048			
총		계		678	"	2,056	평			

54-52

제 883 호

시

보

1982.1.7

사 령

병제 2 호

◎ 1981년 12월 31일자 령제 540 호

새마을지도과
지방행정주사 백 승 관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사무처 진출
을 명함.

◎ 1982년 1월 1일자 령제 1 호

강남병원
지방간호기사보 박 정 애

서대문병원과전
(82.1.1-82.6.30)

서대문병원
지방간호기사보 이 계 선

강남병원과전
(82.1.1-82.6.30)

영등포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고 혜 경

공무원교육원과전
(82.1.1-82.6.30)

서울특별시

부 시 장 이 상 언
관 리 관

서울특별시부시장 (차관급)에 임함.

종합건설본부장 안 찬 희
지 방 관 리 관

관리관에 임함.
종합건설본부장에 포함.

기 획 관 리 실 김 건 뒤
이 사 관

관리관에 임함.
기획관리실장에 포함.

◎ 1982년 1월 4일자

강남구청무국 김 영 근
지 방 서 기 관

서기관에 임함.
강남구청무국장에 포함.

관악구시민국 권 석
지 방 서 기 관

서기관에 임함
운수1과장에 포함

정책조정담당관 김 성 순
서 기 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

<p>무자관리담당관 박 형 서 서 기 관</p>	<p>중 구 주 택 과 김 주 환 지 방 행 정 주 사</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중구근무를 명함.</p>
<p>세종문화회관사무과장 배 병 호 서 기 관</p>	<p>기 획 관 리 실 (올 림 피 기 회 반) 김 명 현</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전출을 명함.</p>	<p>지 방 행 정 주 사</p>
<p>대 통 령</p>	<p>지 방 행 정 사 무 관 에 임 함. 기 획 관 리 실 (올 림 피 기 회 반) 근 무 를</p>
<p>© 1982년 1월 8일자 령제 3호</p>	<p>명 함.</p>
<p>공무원교육원 이 방 수 지 방 행 정 주 사</p>	<p>령 제 4 호</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p>	<p>아 동 상 담 소 김 건 배 지 방 별 정 직 8 급 상 당 원 에 의 하 여 그 직 을 면 함.</p>
<p>공무원교육원 이 종 우 지 방 행 정 주 사</p>	<p>© 1982년 1월 11일자 령제 5호</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근무를 명함.</p>	<p>내 무 국 김 영 만 이 사 관 국 방 대 학 원 파 견 근 무 를 명 함. (82.1.11-82.12.25)</p>
<p>지하철운영사업소 박 용 서 지 방 행 정 주 사</p>	<p>내 무 국 김 원 오 부 이 사 관</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국 방 대 학 원 파 견 근 무 를 명 함. (82.1.11-82.12.25)</p>
<p>지하철운영사업소 허 욱 지 방 행 정 주 사</p>	<p>내 무 국 배 상 승 부 이 사 관 국 방 대 학 원 파 견 근 무 를 명 함. (82.1.11-82.12.25)</p>
<p>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지하철운영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